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96

발의연월일: 2021. 5. 21.

발 의 자:위성곤·김승원·민형배

소병철 · 송재호 · 양정숙

오영훈 • 윤재갑 • 이개호

이용선 · 이원택 · 허 영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국가는 제주자치도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이념확산을 위한 기념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법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동안 제주자치도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에 세계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하여 국유재산(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양여를 요구해 왔으나, 국가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양여할 수있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협약을 토대로 국 유재산 사용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및 사용 허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가는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할 때까지 해당 국유재산을 제주자치도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안 제235조제4항).
- 나. 국가는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경우 「국 유재산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안 제235조제5항).
- 다. 제5항의 허가기간이 지난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제1 항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0년의 범위 내에서 종전의 사용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안 제235조제6항).

법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3항 중 "국유재산 중"을 "국유재산(알뜨르비행장 일원 포함)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할 때까지 해당 국유재산을 제주자치도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⑤ 국가는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기간을 50년 이 내로 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허가기간이 지난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제 1항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0년의 범위 내에서 종전의 사 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안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widehat{(3)}$ ----불구하고 제2항제5호에 따른 기 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 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 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 국유재산(알뜨르비행장 일원 포함<u>) 중</u>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 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국유재 산을 양여할 때까지 해당 국유 재산을 제주자치도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신 설> ⑤ 국가는 제4항에 따라 국유재 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경 우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허가기간이 지난 경 <신 설> 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 조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50년의 범위 내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현 행	개 정 안
	<u>있다.</u>
<u>④</u> · <u>⑤</u> (생 략)	<u>⑦</u> ⋅ <u>⑧</u>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